

## 여비규정

제정 1997. 5. 27.  
 개정 2001. 9. 28.  
 개정 2007. 6. 1.  
 개정 2008. 8. 1.  
 개정 2011. 7. 1.  
 개정 2012. 4. 1.  
 개정 2017. 3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교직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학교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여비의 종류)** 여비는 운임, 일비, 숙박비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한다.

**제3조(여비의 지급 구분)** 여비의 지급구분은 <별표 1>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**제4조(여비의 계산)**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

**제5조(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여행시의 여비)**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**제6조(여비지급)** ① 국내출장에 대한 여비는 <별표 2>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단, 근무일 당일 여행인 경우 운임비만 지급한다. <개정 2012.4.1>  
 ② 국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 16조 제1항에 관련된 별표 4에 의거하여 지출하고, 국외준비금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 23조 제1항에 관련된 별표 7에 의거하여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 실비정산을 해야 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.

**제6조의2(운임 지급 예외)** 학교 차량을 이용하여 육로 여행만을 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*제7조(여행일수의 계산)**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.

**제7조의2(여비의 정산 및 복명 등)** ①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주일 이내에,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,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출장 또는 교육수료 내용을 복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8.1>

**제8조(기타사항의 발생 시)** 위 사항이 아닌 별도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
## 부 칙

-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&lt;별표 1&gt;

국내여비 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

구 분	해 당 교 직 원
제 1호	총장
제 2호	교수 · 부교수 및 보직교수(실 · 처장, 원장 이상)
제 3호	조교수, 팀장 이상 행정직원
제 4호	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교직원

## &lt;별표 2&gt;

국내여비 정액표(제6조 관련)

(단위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고속버스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 비 (1식당)
제1호	KTX특실	1등정액	정 액	정 액	정 액	30,000	실 비	실 비
제2호	KTX특실	2등정액	정 액	정 액	정 액	25,000	46,000	8,500
제3호	KTX보통실	2등정액	정 액	정 액	정 액	20,000	35,000	7,000
제4호	KTX보통실	2등정액	정 액	정 액	정 액	20,000	30,000	7,000

- 비 고 : 1.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주행거리를 확인하여 공식 연비를 계산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, 공식연비는 1ℓ 당 10km로 하되 지식경제부 고시 유가정보의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 단, 톨게이트비용을 포함한다.
2. 주행거리란 공무를 위한 실제 거리를 말한다.
3. 철도운임 중 KTX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부서의 장이 철도의 종류를 지정하며,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특실정액 운임, 제3호 및 제4호는 일반실 정액 운임을 지급한다.
4.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 해당자에 대해서 특등, 기타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한다.
5. 각 부서의 장 또는 원장은 부원들의 출장시 교통 수단을 결정한다.
6. 숙박비 지급을 부득이 실비 정산을 해야 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.
7. <삭제>